

윤리강령

주식회사 원하이텍

윤리강령

제1조 (목적)

본 윤리강령은 주식회사 원하이텍(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요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회사가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강령의 적용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준수의무)

회사의 임직원은 고객, 동료, 협력업체 등 상대방과의 모든 관계 및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본 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윤리강령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를 취한다.

제 4 조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4.1. 고객존중

(1)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의 정당한 요구와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3) 회사는 고객에게 건설생산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 과장광고 등을 하지 않으며 정직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한다.

4.2. 고객만족 경영

(1)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을 실천한다.

(2) 고객과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으며,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3) 진실한 마음과 친절함 태도로 고객을 대하며, 고객의 제안과 불만을 겸허하게 수용한다.

4.3.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 (1) 혁신과 창의를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참된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하여 제공한다.
- (2)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며,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으로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4.4. 고객 보호

- (1)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한다.
- (2)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여 고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 (3)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 (4) 고객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그 어떤 비도덕적인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

제 5 조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약속)

5.1. 주주의 권익 보호

- (1)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 (2)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주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 (3) 회사는 항상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5.2. 상호신뢰

- (1) 주주와의 상호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서 기업정보를 정해진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며, 회계자료 등의 처리 및 보고는 해당 국가의 기준과 법규에 철저히 따른다.
- (2) 임직원은 회사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제 6 조 (경쟁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6.1. 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회사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법규를 준수한다.

6.2.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 (1) 회사는 협력회사와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거래를 통해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2)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3)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상호 보완한다.
- (4) 회사는 건전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7조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자세)

7.1. 국내외 법규의 준수

- (1)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국내 법규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 및 국제 협약을 준수한다.
- (2) 회사는 국내외 법규에서 규정한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합법적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7.2. 정치활동 관여 금지

- (1)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어떠한 선거직의 후보자 정당, 정치 위원회에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단, 회사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 (2) 임직원의 개인적 견해를 존중하거나,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회사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7.3. 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

- (1)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 (2)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임직원들의 건전한 사회봉사, 재난구호, 사회계몽 등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하며, 사회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한다.
- (3)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7.4. 환경친화적 경영

- (1) 회사는 환경 관련 국내·외 법규 및 국제 협약을 준수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공공의 건강과 안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모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환경성과를 개선한다.

(3) 회사는 자원의 절약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연보존에 앞장선다.

7.5.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1) 회사는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며 안전과 품질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2) 회사는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한다.

제8조 (임직원에 대한 책임)

8.1. 임직원 존중

(1)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며, 각각의 개성과 존엄성을 존중한다.

(2) 임직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직원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3) 임직원의 신체 · 정신적 · 사회적 안녕을 최대한 보장하고, 생리학적, 심리학적 역량에 맞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4) 임직원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5) 비윤리 · 불법행위 신고자 혹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8.2. 공정한 대우

(1) 회사는 고용, 승진, 보상, 연수기회 등의 고용 관행에 있어 성별, 학력, 종교, 출신지역, 인종, 피부색, 결혼여부, 언어, 민족, 사회적 지위, 장애, 재산 등에 근거해서 차별을 하지 않는다.

(2)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당하게 보상한다.

8.3. 인재의 육성

(1) 회사는 임직원에게 교육, 기술개발, 훈련 및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의 역량과 업무 능력을 확대하고 건강한 양질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회사는 임직원에게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업무를 부여하고, 지속적 교육을 통해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3) 회사는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을 장려하며, 능력개발을 위한 지원과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한다.

8.4. 근무환경 조성

(1)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8.5. 제보자 보호

비윤리·불법행위 신고자 혹은 내부고발자의 정당한 제보(상담·신고) 및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제출(제공) 등을 이유로 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아래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1)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다.

(2)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제보자의 신분이나 제보내용을 문의하거나, 이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된다.

(3) 제보자는 피 제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복이나 불이익의 우려가 있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알려 시정 및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접수된 보호요청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제보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4)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해서도 제보자와 동등하게 보호한다.

(5) 윤리경영 담당조직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보자의 보복, 불이익 등 피해발생 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9조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9.1. 임직원의 기본윤리

(1)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금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2)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의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과 제반 법률, 사규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며, 비윤리적 상황에 처하거나 이를 목격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할 의무가 있다.

(4) 윤리경영 위반 사항을 인지하였을 경우, 반드시 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조직(사업부/본부/팀) 내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5) 관련 부서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6) 회사의 자산, 예산 등을 업무상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회사의 모든 유·무형 자산을 무단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보안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9.2. 공정한 직무수행

(1)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태의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에게 요구·수취하거나 전달하지 않는다. 단,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는 사전에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물적·지적 재산을 유용·횡령하는 등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의 허가 없이 개인 영리의 목적으로 사업에 종사하지 않는다.

(3) 임직원은 직무 및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나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상사는 부하에게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상사로부터 법규 및 회사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이후에도 이런 지시행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내부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한다.